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선택적복지제도운영내규

제정 2018. 1. 4.

개정 2021. 12. 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선택적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택적복지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임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선택적복지제도는 임직원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택적복지제도(이하 “복지제도”라 한다)라 함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임직원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2. “복지포인트”라 함은 선택적 복지항목을 사용할 수 있는 비용으로 1포인트는 1천원으로 한다.
3. “기본항목”이라 함은 의무적 선택 또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 받게되는 것으로 구성된 항목을 말한다.
4. “자율항목”이라 함은 임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을 말한다.
5. “기본포인트”라 함은 제4조의 적용대상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포인트를 말한다.
6. “근속포인트”라 함은 근속년수에 따라 개인별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복지포인트를 말한다.
7. “가족포인트”라 함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개인별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복지포인트를 말한다.

8. “시간선택제”라 함은 인사규정에 따라 시간선택제 정규직으로 채용된 직원을 말한다.

9. “정원외 직원”이라 함은 기간제근로자관리내규에 따라 채용된 직원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① 이 내규는 공단 임직원에게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복지제도의 적용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공단인사규정 제45조(휴직)에서 규정한 휴직에 해당하는 자
2.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3. 직원의 휴직에 따라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자

② 정직·휴직·퇴직 등으로 급여지급 사유가 중단 또는 소멸된 경우 그 사유일을 기준으로 지급이 정지된다.

제5조(적용기간) 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장 지급기준

제6조(포인트 배정기준) ① 공단은 임직원의 복지포인트를 산출하여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하고, 세부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제3조제5호에 따른 기본포인트는 적용대상에게 일률적으로 배정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직원의 기본포인트는 다음 계산식에 의거하여 산정한다.

기본포인트 = 통상적인 기본포인트 × (시간선택제 직원의 주당 소정근로시간/동종 통상직원의 주당 소정근로시간)

③ 제3조제6호에 따른 근속 포인트의 근거가 되는 근속기간은 공단에서의 재직기간 및 군경력기간으로 산정한다.

④ 제3조제7호에 따른 가족포인트의 근거가 되는 가족의 범위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와 자녀만 해당한다.

⑤ 정원외 직원에 대한 포인트 배정기준은 안성시시설관리공단기간제근로자 관리내규를 따른다.

제7조(신분변동자에 대한 복지점수 부여) 적용기간중 신규채용, 휴직, 복직, 해임, 파면, 면직, 퇴직 등의 임용행위로 인하여 복지점수 사용권한이 발생중단 또는 소멸할 경우에는 그변동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에 따라 복지점수를 계산한다.

제8조(포인트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포인트는 연도별로 부여하며, 포인트의 산정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연도 중 신분 변경(신규채용·휴직·복직·직위해제·정직·퇴직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월의 15일을 기준(15일까지는 제외하고 16일 이후는 1개월로 산정)으로 월할 계산하여 배정 또는 감액한다.

③ 제6조제3항에 따라 연중 근속년수가 변동할 경우에는 포인트에 반영하지 않는다. <개정 2021. 12. 29.>

④ 제6조제4항에 따라 부양가족의 수가 변동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출생·사망·주소이전 등)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 할 계산하여 배정한다. <개정 2021. 12. 29.>

⑤ 제2항에 따라 감액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급여에서 차감하여 환수할 수 있다.

제9조(이월의 금지) 복지포인트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잔여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제3장 선택항목 및 이용기준

제10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복지제도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계·운영하는 항목으로써 적용대상에게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제11조(자율항목) ① 자율항목은 복지수요와 복지효과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항목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율항목은 개인의 복지수요에 따라 연중 수시로 선택하여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가능한 서비스 분야 및 지급제한 분야는 「별표2」와 같다.

제4장 운영 및 회계

제12조(개인별 선택) ① 제6조에 따라 개인에게 지급된 포인트의 범위 내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기본항목에 속한 복지항목은 전년도 12월중에 설계하되, 자율항목에 속한

복지항목은 기본항목에 소요되는 포인트를 공제하고 남은 포인트의 범위 안에서 연중 수시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비용지급 및 회계처리) ① 의무항목 설계·운영에 따른 비용은 운영자가 공급자에게 직접 지불하거나, 자율항목 운영에 따른 비용은 사후 정산방식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사후 정산에 의한 비용의 지불은 지급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계좌입금 방식에 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리운영자는 매월 단위로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복지비 지급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처리를 함으로써 회계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제14조(관리시스템 위탁운영) ① 공단은 복잡 다양한 가맹점 관리와 복지포인트의 관리·정산 등 운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카드시스템 전문회사 및 카드사(시중은행)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카드시스템 전문회사 및 카드사(시중은행) 선정은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제5장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위원회

제15조(선택적복지제도 운영위원회) ①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단 임직원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경영사업부장, 복지제도운영 소관 담당팀장과 감사업무 담당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공단 노동조합에서 직원을 대표할 수 있는 2인을 추천토록 하여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복지제도 재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이사장이 제도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운영위원임기) 당연직을 제외한 추천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특별한 직위의 변동이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연장된다.

제17조(운영위원회 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할 시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이 내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2. 29.>

이 내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포인트 배정기준

기본 포인트	근속포인트		가족포인트		
	상한액	근속년수 (1년당)	상한액	배우자	직계 존비속
800P	200P	10P	200P	100P	1인당 50P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해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부양가족을 말함(가족 수당 지급대상인 부양가족의 범위와 요건은 공무원 수당등의 업무 처리기준을 준용)

※ 가족 포인트는 같은 소속 임직원일 경우(부부직원)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1인의 직원에게만 가족점수를 부여, 공무원 배우자일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표 2]

복지포인트 사용항목 및 제한항목

구분	수혜 대상	항목	사용범위	제한항목
건강 관리	본인 가족	건강검진	종합건강검진(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 의료기기/용품 구입비	
		외래진료비	병·의원 진료비, 약제비, 종합병원·병원(응급실운영)·한방·치과·의원·한의원·산후조리원 이용료	
		스포츠센터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등 건강시설 이용료	
		스포츠용품	운동기기, 스포츠용품, 스포츠의류 구입비	
		안경/보청기 등	시력교정용 안경 및 렌즈 구입비(* 선글라스, 고글 포함), 보청기·의족 등 구입	
자기 계발	본인	학원수강	학원수강료, 교육비 (인터넷 교육 가능)	- 현금 또는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상품권, 주유권, 증권, 귀금속 등) - 유흥비(노래방, 카지노, 유흥주점 등) - 시계, 악세사리 (반지귀걸이 등) - 미용목적의 치료 (성형수술 등) - 단순 물품 구입 - 대형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등)
	본인 가족	온라인/일반서점	교양서적 및 법률서적 등 전문도서 구입	
학습기		어학기·전자사전·교육용 만화·CD 등 구입		
여가 활용 (레저, 문화 생활)	본인 가족	숙박	본인 및 가족의 여행관련 숙박료(호텔, 여관, 콘도 등)	
		레포츠	레저/스포츠활동 (스키, 볼링, 수영, 래프팅, 번지점프, 패러글라이딩 등)	
		레저용품	레저용품, 등산용품 구입비	
		국내여행/해외여행	여행관련 운임 (철도·고속버스·여객선·렌터카), 항공료, 여행사를 통한 국내/해외여행	
		영화/공연/전시	영화, 공연, 전시회, 놀이공원(롯데월드, 에버랜드) 등 관람·이용료	
취미생활	악기·온라인 음원 다운로드/음반·테이프·비디오구입 요리, 바둑, 무용, 꽃꽂이, 서예, 서화, 탭댄스, 피아노 등 악기교습			
가정 친화	본인 가족	취학 전 자녀	보육시설 이용료 및 교육비 (놀이방·어린이집·유치원비), 안성아동발달센터	
		직계존속	노인복지시설 이용료 (요양원·실버타운)	
		꽃배달	기념일 꽃배달, 꽃선물, 화환(가족기념일, 경조사)	
		이사비용	본인의 이사비용 (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 이사계약서, 영수증)	
기타 (의류·신발류, 가전제품 등)	본인 가족	의류/신발	의류/신발 카드구매 가능 컴퓨터, 세탁기,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 구입 여행목적의 식사비, 주유비 가능	